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2022년 6월 22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기 획 재 정 부 관 추 경 호

●대통령령 제32717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3, 별표 4,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을 “별표 3,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1”로 한다.
별표 3 1214.90 및 2308.00의 한계수량란 중 “700,000톤”을 “1,000,000톤”으로 한다.
별표 3 중 2709.00란 및 7202.4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709	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	39,500,000 배럴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7202	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를 초과하는 것	0	수입 전량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같은 표 1214.90 및 2308.00의 한계수량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9]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 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 다)			
0203	1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203	19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삼겹살	0	8,000톤
			2. 기타	0	4,000톤
0203	2	냉동한 것			
0203	29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삼겹살	0	2,000톤
			2. 기타	0	36,000톤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 나 찢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 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8	1	알의 노른자위			

0408	11	건조한 것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i>G a l l u 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240톤
0408	19	기타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i>G a l l u 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1,440톤
0408	9	기타			
0408	91	건조한 것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i>G a l l u 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240톤
0408	99	기타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3,480톤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3502	1	알의 흰자위(egg albumin)			
3502	11	건조한 것	식품 원료용의 것	0	480톤
3502	19	기타	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	0	840톤

			의 것		
1001		밀과 메슬린(meslin)			
1001	9	기타			
1001	99	기타			
		2. 제분용			
		나. 기타		0	수입 전량
		3. 기타			
		나. 기타		0	수입 전량
1101	00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1. 밀가루		0	수입 전량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	10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식품용	0	수입 전량
1507	90	기타			
		1. 정제유	식품용	0	수입 전량
1512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 ·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2	1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	11	조유(粗油)			
		1. 해바라기씨유	0	수입	전량
1512	19	기타			
		1. 정제유(精製油)			
		가. 해바라기씨유	0	수입	전량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2. 기타	0	수입	전량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 · 인 · 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	10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	요소수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	3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0	수입 전량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	9	기타		
3824	99	기타		
		3. 기타	전해액첨가제(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7202	4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7202	49	기타	0	수입 전량
8111	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철강제조용 0	수입 전량

[별표 10]

2022년 9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2709	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나프타 제조에 사용 되는 원유	0	51,500,000 배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별표 11]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포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2709	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나프타 제조에 사용 되는 원유	0.5	51,500,000 배럴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국제 에너지 가격 및 농작물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2022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0퍼센트로 인하하고, 사료용 뿌리채소류 등의 할당관세 적용 한계수량을 700,000톤에서 1,000,000톤으로 확대하며, 식품원료인 돼지고기와 밀가루 등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이차전지 및 철강 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첨가제 및 철강 제조용 망간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할당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